

「사상구 구인구직개척단」 채용 공고

2020년도 상반기 사상구 구인구직개척단에서 근무할 취업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19.11.27.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1. 채용개요 및 근무조건

- 가. 채용인원: 5명
- 나. 근로기간: 2020. 1. 6. ~ 6. 30. (6개월)
- 다. 보 수: 월 1,500,000원 상당
- 라. 근무시간: 주 5일, 1일 7시간(09:00~17:00) ※ 필요시 10:00 ~ 18:00
-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바. 근 무 처: 사상구청 일자리+센터, W+센터
- 사. 담당업무: 구인기업·구직자 발굴 및 취업상담·연계, 취업관련 행사 지원 등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부산시 거주자 중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
-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라. 우대조건
 - 사상구 거주 및 사상구 구인구직개척단 근무 경력자
 -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전산자격증 소지자
 - 취약계층 등

3.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19.12. 4.(수) ~ 6.(금)
- 나. 신 청 서: 사상구청 홈페이지(sasang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다. 접수방법: 사상구청 일자리센터(6층) 방문 접수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참여자격 및 우대조건 등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1차 합격자 발표: 2019.12.12.(목) ▷개인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면접심사) ※일시·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자·장소: 2019.12.17.(화), 사상구청 4층 브리핑룸
- 면접방법: 개별 대면 면접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9.12.20.(금) ▷개인별 유선 통보

- 서류 및 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제출서류

가. 취업상담원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부

나. 고용보험이력내역서(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발급)

다. 자격증 사본 1부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증명서(취약계층 증명서 등)

※ 가~나: 필수서류, 다~라: 해당자만 제출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선발을 무효로 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요금부담)을 통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 운영: '19.12.23.~ '20. 1. 6.(15일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310-5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인구직개척단 사업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sjok1211@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
4.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1월 6일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사 상 구 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상구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